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인재경영실 인사부

전부개정 2019. 12. 10. 지침 제285호

개정 2021. 01. 19. 지침 제324호

개정 2021. 09. 03. 지침 제342호

개정 2023. 02. 27. 지침 제394호

개정 2024. 06. 24. 지침 제42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1.9.3., 2024.6.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기타 심사평가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 2024.6.24.>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 조항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2021.1.19.>

③ 이 지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른 사건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 조사하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병합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4.6.24.>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2023.2.27., 2024.6.24.>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특정인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혐의에 관하여 고충상담 창구에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청인”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 지목되어 고충상담창구에 사건이 접수된 사람을 말한다.
7.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하여 직·간접의 경험,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

람을 말한다.

8.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조사·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피해

9. “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1.9.3., 2024.6.24.>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등 관련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임·직원에게 대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8.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원장 또는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원장 또는 임원급 이외인 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가 보건복지부에 신고 되어 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이관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의 지휘·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4.]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4.]

제6조(구성원의 책무) 직원(피신청인, 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제3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6.24.]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적극 알려 임·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조정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업무

6.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일지,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1.9.3., 2024.6.24.]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심사평가원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개정 2024.6.24.]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수강 등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1.9.3., 2023.2.27., 2024.6.24.>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④ 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개정 2024.6.24.>

제10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

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강사약력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⑦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에 게시·구비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4.6.24.>

[전면개정 2021.9.3.]

[제목개정 2024.6.24.]

제10조의2(스토킹 예방교육) ① 원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원장은 스토킹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에 게시·구비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4.]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상담을 원하는 직원,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방문 및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6.24.>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시 신청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⑤ 상담 결과 스토킹 피해나 위협의 정황이 파악된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원장에게 보고하여 제1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4.>

제12조(사건의 접수)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방문 및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서면을 제외한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

[전면개정 2021.9.3., 2023.2.27., 2024.6.24.]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원장 및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원장 및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4.>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통보/신고) 동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6.24.>

[본조신설 2023.2.27.]

제14조(조사)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원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② 제12조에 따라 피해자 등이 조사를 요구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피해자 등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이 감사담당부서에 개별적으로 신고한 경우 본문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 받은 감사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 권한에 맞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원은 피신청인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 징구를 포함하여 문답 및 자료제출 요구 등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사과정에 고충상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1. 성희롱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범위

2. 제5항에 따라 병합된 괴롭힘 사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하는 범위

3. 성폭력·스토킹 사건: 관계법령 및 일반 형사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④ 조사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⑥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조사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조사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적 비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조사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조사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⑫ 감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알려야하고, 인사담당부서장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전면개정 2021.9.3., 2024.6.24.]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

원, 행위자 또는 피신청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1.9.3., 2024.6.24.>

② 원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3.>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3.2.27., 2024.6.24.>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24.>

제16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①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취소 신청서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 2023.2.27., 2024.6.24.>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중지) 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5.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피신청인과 조정·중재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조사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4조제4항의 조사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1.9.3., 2023.2.27., 2024.6.24.]

제18조(조사결과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경우(조사 중지 포함)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 기획상임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상임이사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제19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전면개정 2021.9.3., 2023.2.27., 2024.6.24.]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4.>

③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노동조합이 지명한 1인과 원장이 지명한 1급 또는 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직원, 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24.>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6.24.>

[제목개정 2021.1.19.]

[전면개정 2021.9.3.]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요구
3. 피해자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5.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7조제3항 각 호의 심의사항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⑤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2.27.>

[전면개정 2021.9.3., 2024.6.24.]

제2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2.27.>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등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④ 제척·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신청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신설 2023.2.27.> <개정 2024.6.24.>

⑤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척, 기피 및 회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지명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개정 2023.2.27.>

[제목개정 2023.2.27.]

제22조(징계요청 등) ① 원장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심의·의결 결과, 해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이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다고 판단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1.9.3., 2023.2.27., 2024.6.24.>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 2023.2.27., 2024.6.24.>

④ 원장은 제3조제8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요청·감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6.24.>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1.9.3.>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 2024.6.24.>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부서 변경, 업무분장 또는 업무공간의 조정, 피해자 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4.6.24.>

④ 원장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9.> <개정 2021.9.3.>

⑤ 원장은 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4.6.24.>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2023.2.27.>

⑦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2.27.>

[제목개정 2021.1.19.]

제24조(기타사항)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285호, 2019. 12. 10.>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324호, 2021. 1. 19.>

이 지침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342호, 2021. 9. 3.>

이 지침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394호, 2023. 2. 27.>

이 지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429호, 2024. 6. 24.>

이 지침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장

			상담번호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성명			
	신청일시		신청방법	※ 유선, 방문(장소) 등
상담개요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상담장소	
	상담방법	1.대면 <input type="checkbox"/> , 2.유선 <input type="checkbox"/> , 3.온라인(E-Mail, 사이버신고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4.기타()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생략 가능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해자와의 관계: 1.본인 <input type="checkbox"/> , 2.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 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사유 및 후속조치 ※ 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기타		종결일자 년 월 일
	사건 접수 여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작성일자 : 작성 자 : 확 인 자 :				

				상담번호		
사건 (통보 / 신고) 동의 확인서						
확인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input type="checkbox"/> , 수사기관 신고 <input type="checkbox"/>)에 동의합니다.()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input type="checkbox"/> , 수사기관 신고 <input type="checkbox"/>)에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 :					
<p>* 주 :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함</p> <p>위 확인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p>						

비밀보호서약서

- 소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
- ② 사건내용 및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 ③ 조사기간 중 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 ④ 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2조제4항에 따라 징계 또는 감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6.24.>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사건번호 호 고충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 피신청인 인적사항
- 피해 주장사실 요지
- 조사결과
- 처리의견

조사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심의 대상자	성명		직위		소속		
	생년월일		직급		재직기간	총재직기간	
						현직급 재직기간	
현주소							
심의 사유							
심의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함.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생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희룡·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밀보호서약서

- 소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의사항			①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③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p>「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소					
<p>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 안 개 요	피해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행위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사건현황	※ 발생일시, 장소, 경위 등
조사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사항 및 조사경과(일정)을 간략히 서술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내용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본인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기에 신청(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구분	신청(확인) 사유	체크
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
기피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회피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세부 내용		

- 주) 1.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체크란에 “O” 표시(중복표시 가능)
2. 세부내용 : 제척, 기피 또는 회피관련 구체적인 내용 기재

20 . . .

신청인 (서명)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장 귀하